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12월 일 (제 276 회)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8년 12월 일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2
----------	-----

발의연월일 : 2008년 12월 일
 발 의 자 : 민경환·박중갑·이영복·
 권광택·박영웅·송은섭·
 심홍섭(7인)

1. 제안이유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양질의 산림문화·휴양공간 제공과 휴양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 중 「산림법」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10조)
- 나. 시설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근거 정비 및 사용료 현실화 (안 제3조의 별표)
- 다.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2조, 제5조 등)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중 항 번호 "㉠"을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10조 본문 중 "산림법 제3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사용요금표

구 분		기 준	1일요금(원)	비고
숲속의 집	23㎡ 이하	1동/5인	40,000	
	26㎡	1동/6인	50,000	
	54㎡	1동/10인	100,000	
	59㎡	1동/12인	120,000	
다가구 숲속의집	21㎡	1실/5인	40,000	
	30㎡	1실/6인	60,000	
단체숙소	84㎡	1동/1일	120,000	
오토캠프장		승용차1대/ 텐트1조	5,000	
야영장	데크없음	7~8인용	3,000	
사계절 썰매장	일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1일/1인	5,000	
			4,000	
			3,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청소년</u> :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13세이상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생략) 4. <u>시설사용료</u> : 산림법 제 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청소년</u>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u>시설사용료</u>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p>제3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3조(시설사용료) <u>시설사용료의</u> -----.</p>
<p>제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p>제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u>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p>제10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u>산림법 제 3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의</u>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위탁관리)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p>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시설사용요금표 (단위: 원)					【별표】 시설사용요금표 (단위: 원)				
구 분		기 준	1일요금	비고	구 분		기 준	1일요금	비고
숲속의 집	5평형	1동/4인	30,000		숲속의 집	23㎡ 이하	1동/5인	40,000	
	6평형	1동/5인	40,000			26㎡	1동/6인	50,000	
	7평형	1동/5인	40,000			54㎡	1동/10인	100,000	
						59㎡	1동/12인	120,000	
다가구 숲속의집	7평형	1실/5인	40,000		다가구 숲속의집	21㎡	1실/5인	40,000	
	8평형	1실/6인	50,000			30㎡	1실/6인	60,000	
단체숙소	25평형	1동/1일	120,000		단체숙소	84㎡	1동/1일	120,000	
오토캠프장		승용차 1대 및 텐트1조	5,000		오토캠프장		승용차 1대 /텐트1조	5,000	
야영장	테크 없음	7~8인용	3,000		야영장	테크 없음	7~8인용	3,000	
사계절 썰매장	일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1일/1인	5,000		사계절 썰매장	일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1일/1인	5,000	
			4,000					4,000	
			3,000					3,000	

관계 법령 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6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4호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1. ~ 14.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 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각각 정한다.